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 이주 지원〉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78)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31.
3. 회부연월일 : 2025. 8.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을 지원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하거나 거주하는 청년 등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사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중장년 등의 이주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주거·고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청년·중장년 등의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시 주거·고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u>정착</u>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 ----- ----- <u>이주 및 정착</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u>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주거·고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u>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u>정착</u>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 ----- <u>이주 및 정착</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 지원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¹⁾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지역으로의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²⁾, 공유지 우선 매각 외에도 공유지의 우선 대부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물품 대부료 감면³⁾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순인구이동률⁴⁾ 평균은 최근 3년간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임.

[최근 4년간 인구감소지역 순이동률]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순이동률 평균	-0.44	0.21	0.12	-0.22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66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2조의2(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66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4) 순인구이동률 = {(전입인구 - 전출인구)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주민등록 연앙인구 = [연초 주민등록인구 + 연말 주민등록인구] / 2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이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중장년의 주거·고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대부하거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촉진하려는 입법 조치가 이루어 졌음.⁵⁾

개정안 도입시에는 위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이주시 혜택을 부여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유희부지나 유희공간을 인구감소지역 이주자를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시설이나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다만, 인구감소지역 내 ‘정착’에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중장년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의미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중장년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입되어 새롭게 거주하도록 하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임금 지원 및 일자리 정보 제공, 창업, 주택 제공 및 수리·임차 비용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⁶⁾ 현행법에는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반영된 측면이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법률 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유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한편, 개정안의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하여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가 제출되었음.

문 의 처

02)6788-5350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